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18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6.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7.16.) 상정, 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의원)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가. 목적규정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등 명시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적정한 가격의

유지, 식량안보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 법의 목표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나. 밀·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공공비축양곡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밀과 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과 콩을 공공비축양곡의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밀·콩의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긍정적 신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양곡수급계획 포함 사항 및 수립 관련 절차 변경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계획의 대상을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 양곡의 운용 및 적정 재고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며, 동 계획을 고시한 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수급계획의 대상 확대 및 양곡의 운용 관련 사항 추가 등과 관련하여 양곡의 재고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식량안보와 양곡의 가격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취지로 보임.

양곡수급계획에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추가 등과 관련하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보임.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의 국회 제출·보고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i) 양곡수급안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며,

ii) 동 계획의 체계적 수립 여부 등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 마련

개정안은 보관시설의 실태점검 및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관리시스템의 보다 지속적·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무수입양곡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쌀값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체계적으로 의무수입양곡을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인 바, 긍정

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화

개정안은 시장격리 미곡의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가격으로 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①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판매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거나,

②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거나 미곡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미곡의 매입을 의무화하고 양곡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격리조치가 적시에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시에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아. 인용 법률 제명의 현행화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한 경우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자. 양곡 가격 결정 관련 제도 신설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혹은 적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차.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설치

개정안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취지로 보임.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이하 “논타작물”)의 재배면적 관리 및 재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

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타. 양곡 생산자 관련 단체 설립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양곡의 생산자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와 생산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격리, 가격보장 등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차원에서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등 생산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파.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개정안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을 위하여 ① 수확 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 이를 정확한 예측 및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의 근거를 마련하며 ③ 미곡 예상생산량 추정을 기반으로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예·관측을 바탕으로 체계적·선제적으로 쌀 수급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곡유통업의 육성 근거 마련

개정안은 유통업의 육성 대상을 미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지방

자치단체도 양곡유통시설 및 양곡 매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밀·콩 등의 양곡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등 규정

개정안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과 국산 양곡 사용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산 식량작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논타작물 정책 강화 방향에 맞춰 쌀 이외의 양곡에 대한 소비촉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